

울(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금리연동형연금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 가. 무배당 금리연동형연금보험 1종 (하이브리드형)
- 나. 무배당 금리연동형연금보험 2종 (에센셜형)

2.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방식,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구분		1종	2종
연금지급개시나이 (Y)		55, 60, 65, 70 세	45 세 ~ 80 세
보험 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사망보장기간)	계약일로부터 (Y)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기간)	보증기간부종신연금: (Y)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 (Y)세 계약해당일부터 5, 10, 15, 20 년 상속연금: (Y)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55, 60, 65, 70 세납	5, 7, 10, 15, 20 년납, (Y)세납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 단, 가입시점에는 10년 보증기간부종신연금으로 함

※ 2종의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는 가입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

3. 보험료 납입기간별 가입나이

- 가. 1종 (하이브리드형)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55세납	만 15세 ~ 43세	55세
60세납	만 15세 ~ 48세	60세
65세납	만 15세 ~ 52세	65세
70세납	만 15세 ~ 56세	70세

나. 2종 (에센셜형)

납입기간 (M)	가입나이 (Z)	연금개시나이 (Y)
5년납	만 15세 ~ 56세(31세)	Max(45, Z+12)세 ~ 80세
7년납	만 15세 ~ 59세(43세)	
10년납	만 15세 ~ 57세(40세)	
15년납	만 15세 ~ 63세(52세)	Max(45, Z+M)세 ~ 80세
20년납	만 15세 ~ 60세(57세)	
(Y)세납	만 15세 ~ 56세(39세)	

※ 단, (Y)세납의 경우 납입년수 12년이상 부터만 선택 가능

※ 단, 20만원 미만의 기본보험료로 가입시, 가입나이의 ()에 기재된 나이를 최고한도로 함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하지 않음

5. 납입보험료의 한도

가. 1종

1종의 납입보험료 한도는 회사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에서 최고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사이로 함.

나. 2 종

(1) 기본보험료 (1 구좌 기준)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한도
7년 미만	만 15세 이상	매월 30만원 ~ 100만원
7년 이상	만 15세 ~ 55세	매월 10만원 ~ 100만원
	56세 이상	매월 30만원 ~ 100만원

(2) 추가납입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는 매 보험년도 총 기본보험료의 2 배 이내에서 수시로 납입이 가능함

6. 보험료의 차등적용 등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 종의 경우,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입되는 경우에는 영업보험료의 1%를 할인함.

7.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가. 2 종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함)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납입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된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초과하

게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라.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사’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이내로 하고,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하며, 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납입일시중지 신청가능회수는 최대 3회로 한다. 단,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사’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한다.

8. 보험료의 납입중지에 관한 사항

2종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장래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유지를 원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단, 계약체결후 10년 이상 지난 계약 (7.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관한사항에 따라 납입일시중지를 한 경우, 계약체결 후 10년에 납입일시중지기간을 더한 기간 이상 지난 계약)일 경우에 한한다.

9.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2종의 경우, 계약자는 사망보장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시점부터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 대출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한다.
- 나.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부가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를 포함한 인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단,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한다.
- 다. '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계약자적립금이 1구좌당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10. 기타

가.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연금계약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2) 제 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5: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0.5 + \text{외부지표금리} \times 0.5$$

-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

$$(2 \times \text{직전}12\text{개월간투자영업수익}) \times 100$$

{직전3개월말현재운용자산+ 전월말현재운용자산-(직전12개월간투자영업수익+ 직전12개월간투자영업비용)}

투자지출률 (%) =

$$(2 \times \text{직전}12\text{개월간투자영업비용}) \times 100$$

{직전3개월말현재운용자산+ 전월말현재운용자산-(직전12개월간투자영업수익+ 직전12개월간투자영업비용)}

(나)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 수익률 (\%)} = (A1 \times 0.6 + A2 \times 0.3 + A3 \times 0.1)$$

A1: 국고채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회사채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통화안정증권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text{※ 가중이동평균이율} = \frac{Mi(-1) \times 3 + Mi(-2) \times 2 + Mi(-3)}{6}$$

Mi(-3)은 직전 3개월, Mi(-2)은 직전 2개월, Mi(-1)은 직전 1개월 이율

- (주) 1.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3년 만기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2.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고시하는 통화안정증권(1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4.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1종의 경우 연복리 2.5%, 2종의 경우 가입후 10년 이내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 초과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를 적용한다.

(5)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

(6) 제 2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산출방법이 변경될 경우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된 공시이율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나.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단,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 선납보험료

선납보험료의 납입은 3 개월분 이상 24 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월납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한다. 선납보험료는 보험료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라.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1.5%」로 하고,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마. 보험가입금액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1 종의 경우 계약자가 설정한 보험가입금액, 2 종의 경우 월납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Min(보험료 납입년수,10)으로 함.

바. 이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 운용한다.

사. 약관 제 7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2 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지해야 함.

아. 연금지급형태의 복수선택

- (1)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에 보증기간부 종신연금(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100세), 확정연금(확정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중 2종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 (2)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복수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 (3) 2종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별 구성비율은 10%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구성비율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나누어서 계산한 연금액을 동시에 지급한다. 단, 각 연금지급형태별 구성비율은 최소 20%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자.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차. 연금지급형태의 소급적용

연금지급형태 중 100세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형태는 다음 상품에도 소급하여 운영한다.

상품명	판매기간
무배당 금리연동형연금보험	2008. 4. 1 ~ 2012. 3. 31